

중소기업 focu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정보보호법(2)

— 정보유출 처벌 강화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

발간주제

25호 : 기업·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및 정보보호 주의의무 강화

26호 : 정보유출 처벌 강화 및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1

하나. 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가능하며,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신뢰 상실, 기업 이미지 저하뿐만 아니라, 소송 등 송무 비용 및 손해배상금 등 실질적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를 충실히 해야 함

개인정보의 예시 (행정자치부)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과 제도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이 확인해야 할 기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 ☞ 이외에도 정보통신, 금융/신용,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확인해야 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2

둘.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사업자의 정보유출에 대한 규제·처벌 강화 : 범죄에 대한 기회 비용을 높여 개인 정보 관련 범죄

▣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위반 관련 매출액의 1/100 ⇒ 3/100 과징금)

☞ 2014. 5. 28. 개정되어 2014. 11. 29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관련 매출액의 3%로 상향 규정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5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개인정보취급의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5의2호)

※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규정 위반이 발견되고, 위탁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인 경우 위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경우,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6호)

※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모두 실행해야 함

☞ 필요한 조치는 입증가능한 수준으로 구비할 것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 정보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정손해배상제도 시행**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의 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도 동 제도 도입 예정

정보유출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정보유출 기업에 보다 강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예정**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 이상으로 가중된 책임(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을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획(2014. 7. 31. 관계부처합동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발표내용)

구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적용요건	기업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기업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입증책임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기업이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구제범위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사실상 피해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배상규모	실제 피해액의 3배이내 배상	30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적용시기	개정법 시행 이후의 유출사고부터 적용됨	
적용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

셋.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시설투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전대비체계 구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투자기업 인센티브

*** 중소기업 정보보호 투자시 조세감면**

☞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시설·제품 등에 대한 직접투자 비용의 3% 세액공제 (2015년도 신규상장 중소기업은 4% 세액공제)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대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중략) …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50인 미만)

• **지원내용** :

- 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무료컨설팅 서비스** :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여 영업중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법적 의무사항 조치방법 안내 및 문서, 업무용 PC, 홈페이지 상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컨설팅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사항 무료 컨설팅 제공
 -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전문 인력에 의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②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무상 지원 서비스** :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제시, 상담 제공
 - ☞ SQL Injection, Cross Site Scripting과 기타 웹 공격에 대한 취약점 점검으로, 홈페이지 변조, 악성코드 삽입, 피싱 사이트 악용 등 인터넷 침해사고 피해의 사전 예방
 - ☞ 점검된 결과는 점검 결과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며, 웹사이트의 운영자 및 점검자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수정 및 보안을 통해 웹사이트의 보안성 제고 가능
- ③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 지원 서비스** : 업무용 PC의 보호조치 사항을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 점검, 비밀번호 관리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점검 가능

• **신청기간** : ~2015.11.30.(지원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Tel. 02-405-5101 / Mail. privacy_support@kisa.or.kr)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정책조사실
031-259-7362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